

# 한국과 주요 외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정승래 · 박현진\* · 장성록†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6. 9. 21. 접수 / 2016. 9. 27. 수정 / 2016. 10. 11. 채택)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Seung Rae Jung · Hyun Jin Park\* · Seong Rok Chang†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Received September 21, 2016 / Revised September 27, 2016 / Accepted October 11, 2016)

**Abstract :**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Korea, the safety issue was highly spotlighted in a number of media, and consequentl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public attention. In addition to this, a recent earthquake in Gyeonju suggested the training issues for public such as evacuation and public safety. Regarding the industry, one of significant reasons causing the accidents were inadequate training, in execution of safety manual or inexperienced first response. Although the engineering or scientific study provided a basis of the industry safety and health in Korea a study focusing on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should be highlighted in that the law is the only way to execute the policy. In this manner, the goal of current study was to compare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in Korea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America, England and Germany. Especially, the law for training method, contents, supervision and punishment was analyzed. Result showed (1) lack of a structured training course for educat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rainer, (2) no training system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public or workers, and (3) less specific law for supervision and punishment as compared to the America, England and Germany.

**Key Words :**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stitute of education, curriculum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ost of education, enforcement and punishment

### 1. 서론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적 통합 지휘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으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최근 경주의 강도 5.8지진이 발생하여<sup>1)</sup> 또 한번 전국적으로 재난안전 및 대피요령 등 각종 매체에서 안전에 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나 재난에 대비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했다. 이는 미연에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재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 몰랐던 결과이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고발생이 쉽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의 부실과 안전작업 매뉴얼 불이행 그리고 현장근로자들의 초기 대응 미숙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기초한 안전보건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2)</sup>.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어 안전보건교육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이다. 그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 Corresponding Author : Seong Rok Chang, Tel : +82-51-629-6468, E-mail : srchang@pknu.ac.kr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

분야에 관한 연구는 공학적·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비로소 정책이 실현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교육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외국(미국,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한 안전보건교육제도를 조사하여 안전보건교육제도와 연관되어있는 관련법규와 교육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감독과 처벌 등에 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과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 법규,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방법, 처벌에 관한 사항들의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과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안전보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국의 교육관련 법규를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방법, 감독 및 처벌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미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분석

#### 3.1.1 미국의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미국 법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규정의 세부기준에 교육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OSHAct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up>4)</sup>에 따라 연방안전보건기준의 공포, 수정, 폐기 권한이 있으며(법 제6조) 주 정부는 연방기준을 상회하는 안전보건기준 및 집행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법 제18조). 노동부장관은 주 계획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경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법체계는 연방정부(노동부)가 관장하는 OSHAct와 안전보건기준, 주정부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관련 법령으로는 타이틀(Title 1~50)과 파트(Part 1~4999)로 구분된 연방 산업안전보건규정(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중에서 타이틀(Title

29)의 파트 1900~1999까지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파트는 다시 업종별 위험특성 등에 따라 서브파트로 세분화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SHAct 제5조 사업주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각종 안전보건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SHAct 제8조 장관은 사업주로 하여금 통보, 게시, 기타 적합한 형태로 적용하는 기준과 함께 근로자의 보호 및 의무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OSHAct 제21조 장관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불안하거나 쾌적하지 못한 작업조건을 인식, 대처 및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립과 감독을 제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할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9 CFR Part 1910 : 안전보건교육 일반
- 29 CFR Part 1915, 1917, 1918 : 해양산업
- 29 CFR Part 1926 : 건설업
- 29 CFR Part 1928 : 농업
- 29 CFR Part 1960 : 근로자 교육훈련

#### 3.1.2 미국의 안전보건교육관련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청(OSHA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며 본부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10개 주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50개주 전체를 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OSHA는 사업장 감독, 사업주 교육 또는 교육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직접 교육은 OSHA가 지정하는 OSHA 교육센터, 순 민간교육기관, 사업장 자체교육의 3가지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매년 OSHA에서는 “OSHA 교육센터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지역별 안전보건교육센터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직원의 경력과 자격, 위치 및 교육시설, 마케팅 및 교육생 모집, 행정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교육센터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5)</sup>.

#### 3.1.3 미국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방법

OSHA 교육센터 중에 한 곳인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sup>6)</sup>. UCSD는 16명의 행정직원과 총35명의 파트타임 강사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성격에

따라 의무교육과정, 안전전문가과정, 강사과정, 사업장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이 있으며 총 300여개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과정으로는 OSHA에서 제정한 일반산업, 건설산업, 해양산업 등의 안전보건기준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강사를 양성·활용하기 위한 강사 교육과정이 있다. 교육수수료는 법적 제한 규정은 없고 교육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교육센터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며 교육비는 \$125~750가 가장 많고, 비싼 과정은 \$925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1.4 미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 감독 및 처벌**

OSHA는 약900만개의 사업장을 매년 감독할 수 없어 감독우선순위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다. 감독대상 선정 후 사업장 감독은 신고사건처리와 작업장 감독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신고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내용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그에 따라 사업주의 대응이 적절한 경우 현장감독은 생략한다. 작업장 감독은 재해 발생률·안전보건상의 조치·근로자 교육 등 최근 안전보건활동 실적에 따라 감독범위를 설정하고 실시한다. 감독관은 교육서류 검토·토론·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하여 사업장 감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 또는 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한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민사벌금의 최대 부과한도는 Table 1과 같이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을 고의로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 또는 장기간 장애를 야기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5만\$ 이상 벌금(동시부과 가능), 벌금은 최대 150만\$ 초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sup>.

Table 1. The Maximum civil penalt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	Content of violation	Civil penalty
Section 17(a)	Business owner who violate the law willfully or repeatedly	\$70,000 per violation (willful violation : over 5,000 \$ per violation)
Section 17(a)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7,000 per violation
Section 17(a)	Not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7,000 per violation
Section 17(a)	When remedial action has not been performed	Violation per day \$7,000 (up to 30 days)
Section 17(a)	When contents in summons has not been published	\$7,000 per violation

**3.2 영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분석**

**3.2.1 영국의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영국 법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HSWAct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sup>7)</sup>, 안전보건규정, 실행지침 및 안내지침으로 구분되어 있다. HSWAct는 의회에서 제정하고 안전보건규정은 보건안전청(HSE :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제정하고 HSWAct 제 50조 1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규정 제정권이 부여된다. 실행지침의 제정과 시행은 HSWAct 제16조 1항에 따라 HSE에 부여하되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행지침을 단순히 미이행한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할 경우 실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도 법정에서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인정 될 수는 있다. 또한 안내지침은 실행지침을 보완하는 자료이며 법적 강제성은 없고 권고사항이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관련 법령은 HSWAct 제2조 2항(C)에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에 포괄적으로 교육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규정에서는 작업 안전관리 규정, 시설장비 안전관리 규정, 사업장 안전관리 일반 규정 등 각 규정의 목적에 따라 교육대상 및 내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보건안전관리규정 제 13조 제2항에 따르면 신규채용자, 업무내용 변경시, 새로운 장비 도입·교체시, 새로운 기술·작업시스템 도입 또는 시스템 교체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적절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위험성이 변경 또는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때에는 근무중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2 영국의 안전보건교육관련 교육기관**

영국의 HSWAct을 집행하는 기관은 HSE이며,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사고조사 등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안전보건교육은 정부와 별도로 민간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sup>8)</sup>.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교육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협회(IOSH :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영국안전협의회(BSC : British Safety Council)), 왕립재해예방협회(RoSPA :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국립산업안전보건평가원(NEBOSH : The National Examination Board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 있다. 그 외에 노동조합, 대학, 무역협회 등에서도 일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2.3 영국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방법**

안전보건규정에서는 교육내용의 기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각 교육기관별 자체 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영국표준협회(BSI : British Standards Institute)에서 제정하는 BS(British Standard)코드를 참조하여 자율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IOSH 와 BSC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IOSH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지원은 없으며 회비 및 교육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2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 양성 및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을 민간교육기관에 유상으로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3가지 세부 교육과정은 안전한 작업과정, 안전한 관리과정, 전문화 교육과정이 있다. 각 교육강사는 국가자격인증 레벨3에 해당하는 안전보건자격자가 강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85~£850까지 과정별로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sup>9)</sup>.

BSC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관운영은 정부지원 없이 교육수입, 감사 및 자문, 자격업무수입, 인증수입, 투자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3개 분야별 34개의 교육과정을 연중 개설하여 연간 약 10만 명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업무로는 NEBOSH와 IOSH로부터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유상으로 공급받아 운영을 하여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안전보건에 대한 학점변환체제인 “자격과 학점연계”를 적용 받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sup>10)</sup>.

**3.2.4 영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 감독 및 처벌**

HSWAct 및 안전보건규정에 있는 교육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HSWAct 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즉결 재판과 기소재판으로 구분하여 최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처벌내용은 HSWAct 제2조

에서 제6조의 사업주 일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21조 위반 개선조치, 제22조 금지조치 또는 제42조 범원의 배상명령 위반, 배상 자격 요구사항 및 법에 따라 제정된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Table 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WAct 제36조(제3자에 의한 사고) 및 제37조(양벌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Table 2와 규정하고 있다<sup>7)</sup>.

**3.3 독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분석**

**3.3.1 독일의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독일 법체제는 정부(연방 및 주정부)와 산재보험조합(DGUV :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산재예방활동을 관리·감독한다. 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근로자에게 각각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다. 사업장 근로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sup>11)</sup> 제12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새로운 장비나 기술을 도입한 경우에 실시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고 필요시 정기적으로 반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근로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사업주에 교육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과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는 조치나 설비, 응급처치 및 비상조치 방법 등에 대하여 최초 작업 전이나 작업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법전(SGB : Sozialgesetzbuch)에서는 DGUV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GB VII 제24조에 DGUV이 사업장내 산재예방 조치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법에 따른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기타 산업안전 전문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비는 DGUV에서 부담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sup>12)</sup>.

**3.3.2 독일의 안전보건교육관련 교육기관**

독일은 연방 및 주정부의 교육담당부서에서 교육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직접적인 교육은 산재보험조합이 수행한다. DGUV은 기술감독관 제도를

Table 2. Rules of punishment in HSWAct

Classification		Contents of punishment
Section 21, 22, 42	Lower Court Maximum	20,000 pounds or 12 months in prison (military service available)
	Higher Court Maximum	unlimited fines or 2 years in prison (military service available)
Section 36, 37	Lower Court Maximum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five years
	Higher Court Maximum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fifteen years

수행하며 기술감독관은 현재 약 2,400여명이 360만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체 평균연봉의 135%를 지급하고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24개월 이상의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교 또는 기술대학 학위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sup>13)</sup>. 기술감독관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작업 시간 손해 및 불편함보다도 무료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장 내 안전부서 역할 증대, 산재보험료 감소효과 등 이익이 더 많다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는 2000년에 산업재해 예방·보상·재활 업무를 통합 수행토록하기 위해 DGUV 교육센터(IG : Institut für Arbeit und Gesundheit)를 설립하여 전문화된 실습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은 DGUV 교육센터(IG)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업종별 교육은 산업별 BG(Berufsgenossenschaft)에서 수행한다. BG에서는 안전감독관, 안전보건전문가, 주정부 안전담당자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3.3.3 독일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방법

독일의 대표적인 안전보건교육 기관으로 DGUV 산하기관인 드레스덴 교육센터(IG)가 있다. IG의 모든 교육과정은 DGUV 회원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운영은 DGUV에서 매년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DGUV는 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 운영된다. IG의 전문인력은 대부분 박사급인 연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연구와 교육 및 상담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안전보건 이론을 실습에 적용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기준 IG에서는 예방전문가 교육과정, 강사 자격과정, 산업안전분야 학위 과정 등 총 158개 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sup>14)</sup>.

### 3.3.4 독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 감독 및 처벌

독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관련 감독 및 처벌은 정부(연방 및 주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DGUV의 SGB로 구분할 수 있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의 교육의무를 위반하거나 법 제22조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지시한 산재예방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2만5천유로 근로자는 5천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관할관청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시행령 및 관할관청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근로자를 위협에 처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

금에 처한다.

DGUV의 SGB VII에 따라 기술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을 실시한 결과 재해예방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sup>12)</sup>.

## 3.4 한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분석

### 3.4.1 한국의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한국의 법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sup>15)</sup>, 시행령<sup>16)</sup>, 시행규칙<sup>17)</sup>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교육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 제31조 : 안전·보건교육 일반
- 법 제31조의2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법 제32조 :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내용등 세부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7조, 제3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3.4.2 한국의 안전보건교육관련 교육기관

한국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허가를 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민간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교육은 자격요건을 갖추면 모두 허가를 득할 수 있어 다수의 컨설팅 업체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특별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기관이나 외부에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사업체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5)</sup>.

### 3.4.3 한국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방법

한국의 대표적인 안전보건교육 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sup>18)</sup>은 1988년 설립되어 매년 6만 5천여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의 예산과 교육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직무교육(4개), 양성교육(7개), 안전관리분야 전문화교육(8개), 안전공학분야 전문화교육(18개), 건설안전분야 전문화교육(11개), 산업보건분야 전문화교육(20개), 통신교육(2개) 등 총 70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는 30,000원에서 229,000원까지 교육시간과 과정에 따라 책정되어 있으나 각 사업체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대부분의 교육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방법은 대부분 이론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며 일부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체험식 교육을 위한 장비 등은 일부 구비되어 있으나 한번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 많아 개개인이 모두 체험을 하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외 고용노동부의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민간기관과 협회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과정과 시설보다 우수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3.4.4 한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 감독 및 처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최대 벌칙 규정은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각 규정에 대해 위반을 하였을 경우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제도관련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up>15)</sup>.

**3.5 한국과 주요 외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비교 · 분석**

한국과 주요 외국의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방법, 감독 및 처벌 제도의 비교 ·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한국과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의 관련 법규,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방법, 처벌에 관한 사항들의 세부적인 비교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법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총괄하고 주정부에서 연방정부 법에 따른 각 세부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보건안전청에서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와 산재보험조합이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법체계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과 영국과는 유사한 체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관련 법규를 분석한 결과 독일과 한국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는 규정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였지만 세부규정에 있어서는 독일이 좀 더 체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과 영국 또한 각 파트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한국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분석 결과 한국은 안전보건강사에 대한 교육이 최근에 신설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2개 교육과정이 전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의 강사 교육과정과 독일의 IAG 강사 자격과정 47개와 비교하였을 때 턱 없이 부족한 실정

Table 3. Compariso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Classification	USA	UK	Germany	Korea
Laws on education	• Federation : Part 1900-1999 in Title 29 of regulation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 HSE : HSWAct subsection 2 of section 2 (C)	• Government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s section 12, 14 • DGUV : SGB VII section 24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s section 31(safety · health education)
Institution of education	• OSHA education center appointed by OSHA • Civilian institution • Self education in workplace	• IOSH • BSC • ROSPA • NEBOSH	• IAG is a DGUV-affiliated organization • Industrial BG	• Educational institute of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Civilian department and association • Personal consulting company • Self education in workplace
Curriculum	• UCSD is one of OSHA education center : compulsory education course, safety expert course, instructor course, visit education, online education (over 300 courses)	• IOSH : 24 education courses • BSC : 3 areas (34 education courses)	• IAG : education courses of prevention expert, course of qualification for instructor, course of degree for industrial safety field, etc (operating 158 safety · health education courses)	• Educational institute of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job training, candidate training, expertise training, correspondence education, etc (courses of 70)
Cost of education	• \$ 125~\$ 925	• £ 85~£ 850	• Free (deal with the amounts of money that are raised b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rom DGUV)	• ₩ 30,000 ~ ₩ 229,000 • Employment insurance applicant can be redeem
Punishment	• Simple Violation in case of education undocumented etc : lowest \$25~\$7,000 • Willful Violation : \$5,000 ~ \$70,000	• Lower Court Maximum 20,000 pounds or 12 months in prison • Higher Court Maximum unlimited penalty or 2 years in prison	• Business owner : the maximum 25,000 Euros • Workers : 5,000 Euros (fine) • SGB VII : the maximum 10,000 Euros (fine)	• Fines of less than ₩ 5,000,000

이다. 즉,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강사 교육이 부족하고 그 강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은 이런 전문 강사들이 협회나 민간기관에서 엄격한 자격을 가지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한국은 이런 전문 강사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내용과 방법 또한 중요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 강사의 육성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감독 및 처벌에 관한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모두 금액이나 징역 연한의 차이는 있으나 벌금, 과태료 및 징역, 구속 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국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 한 가지만 있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한국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양벌규정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한국과 주요 외국과 비교·분석하였다. 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1)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61291.html](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61291.html), 2016.

2) S. -H. Kim and M. -S. Bang,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Special Safety Health Training System and Countermeasures in Construction Industry",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 16, No. 1, pp. 29-35, 2014.

3) J. w. Jeong, "International Comparis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Korea Research Information*, 2013.

4) US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5)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Available at <http://www.osha.gov>

6)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vailable at <http://ucsd.edu>

7) UK,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2016.

8)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ailable at <http://www.hse.gov.uk>

9)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vailable at <http://www.iosh.co.uk>

10) *British Safety Council*, Available at <http://www.britsafe.org>

11) *German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1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2013.

13)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Available at <http://dguv.de>

14)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Available at <http://dguv.de/iag>

1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1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nforcement Decre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1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nforcement Regul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18)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vailable at <http://edu.kosha.or.kr>